

#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문미옥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42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6. 16.

발의자 : 문미옥 · 고용진 · 윤종오

김정우 · 신용현 · 박정

이원욱 · 신경민 · 김병관

홍의락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,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, 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을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,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,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고,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대상에도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음.

이에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울산과학기술원도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(안 제27조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).

법률 제 호

##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2호 중 “제14조 및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 제12조의3에”를  
“제14조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 제12조의3 및 「울산과학기술원  
법」 제8조에”로 한다.

제2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7조(대학 교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사립학교법」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(이하 “산업융합지원센터”라 한다)의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(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5조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 및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 제12조의3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li> </ol>	<p>제27조(대학 교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-----</li> </ol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제</p> <p>14조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 제12조의3 및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 제8조에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28조(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) ① 정부는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</p>	<p>제28조(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,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<u>울산과학기술원</u>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